제343회 임시회
2015.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다. 상정일자 : 2015년 10월 20일

○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장회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재단법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 **출연 예정액 : 3,192,000천원(도비 100%)**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4항

○ 산출근거 :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2,560,000천원
특별연구조직 운영 632,000천원

※ 증가내역(442백만원) : 공공투자분석센터 172백만원,
시군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증액 160백만원,
2015년 상반기 인력충원(4명) 인건비 110백만원

□ **출연계획** (단년·반복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15년			2016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2,750,000	2,750,000	-	3,192,000	442,000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은 1실, 3부, 1과, 2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8개 특별연구조직이 운영중에 있으며,

○ 충북도에서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을 위해 매년 운영비 및 사업비를 출연해 오고 있음.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출연금	12,783	500	1,600	1,300	1,300	1,600	1,733	2,000	2,750

○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은 충북씽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해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계획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 다만, 출연규모가 전년대비 442백만원이 증가(16.1%)된 3,192백만원으로,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시군 출연금의 미편성,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 전체적인 수입 감소를 도 출연금 확대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출연금 증가 내역으로는,

- 공공투자분석센터의 기능강화를 위해
  사전예타 및 연구과제 사업비 1억원, 예탁 및 SOC전문가 1명 채용 인건비 57백만원, 복지포인트 등 복지개선비 항목 신설 15백만원 등 총 17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 참고 : 공공투자분석센터 2016년 예산 현황 >

구 분	2015년	2016년	증감 내역
합 계	**350,000천원**	**522,000천원**	**172,000천원**
사업비	173,000천원	273,000천원	100,000천원
	· 사전예타 3건 · 투융자 4회 · 연구과제 1~2건	· **사전예타 5~6건** · 투융자 4회 · 연구과제 3~4건	· 사전예타 1건당 4천만원 소요 · 예타신청 사업 다수 선별
인건비	177,000천원	234,000천원	57,000천원
	· 센터장 1인 · 박 사 1인 · 석 사 2인	· 센터장 1인 · **박 사 2인** · 석 사 2인	· 예타 및 SOC전문가 1인 채용 5,000만원 · 박사 및 석사 연구원 연봉 조정 및 연구원 타부서 급여와 동일하게 산정 (700만원)
복 지 개선비	-	15,000천원	15,000천원
	· 복지혜택 없음	· 센터규정에 있는 복지혜택 지급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연가보상비 등 지급

- 2015년도에 처음 시·군 출연금(160백만원)으로 시·군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시·군의 출연이 불가함에 따라 출연금 160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2015 상반기에 충원된 연구인력(4명) 등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 110백만원을 반영, 총 442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충북발전연구원은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수행을 위한 충북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은 필요하나, 전체적인 수입 감소에 따른 수입증대 자구 노력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2016년 충북발전연구원 인건비 증액내역 >

(단위 : 원)

구 분	2016년	2015년	증 감	비 고
합 계(1+2)	329,042,336	215,555,640	113,486,696	
1. 신규채용자 인건비	243,566,896	174,612,890	68,954,006	※ 연구직 4인 일반직 1인
연봉(연구직3인) 2015년	131,843,520	117,194,240	14,649,280	* 연구직 3인 채용 - 과학기술,농촌관광분야 (2015.6.1) - 복지여성분야 (2015.7.1)
연봉(연구직 1인) 2016년	36,623,200	-	36,623,200	* 2016년 채용 예정
연봉(일반직 1인)	21,041,280	15,780,960	5,260,320	* 일반직 1인 채용 - 2015.4.1
가족수당	3,600,000	3,200,000	400,000	
연구수당(연구직3인) 2015년	9,000,000	8,000,000	1,000,000	
연구수당(연구직1인) 2016년	2,500,000	-	2,500,000	
연구지원수당	1,800,000	1,350,000	450,000	
초과근무수당	2,010,720	1,508,040	502,680	
퇴직금	16,259,893	11,473,600	4,786,293	
법정부담금	18,888,282	16,106,050	2,782,232	
국민연금	8,951,342	7,871,300	1,080,042	
건강보험	6,574,264	5,308,750	1,265,514	
요양보험	430,614	347,720	82,894	
고용보험	1,790,268	1,574,260	216,008	
산재보험	1,141,793	1,004,020	137,773	
2. 정근수당	85,475,440	40,942,750	44,532,690	※ 2015년 1회지급(7월) - '15년 3월 24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하반기1회 지급 ※ 2016년 2회지급(1,7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16년도 충북발전연구원 출연 계획안 1부.

1 출자·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정책기획관실 정책관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은상	김연준	김홍주	2133

기 관 명	충북발전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원 장 : 정초시 (*재단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조직인원) 1실, 3부, 1과, 2분원 / 정원 39명, 현원 31명 (주요기능) 지역현안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3,192,000천원(도비 3,192,000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기준보조율)	2015년			2016년 (C)	증감* (D=C-A)
	계(A+B)	당초(A)	추경(B)		
도비(100%)	2,750,000	2,750,000	-	3,192,000	442,000

* 전년대비 증감내역(442백만원 증)

- 공공투자분석센터 기능강화(350→522) / - 시군 출연금 미편성에 따른 증액(160)
- 2015 상반기 연구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4명/110백만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속적인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법적근거 미비로 시군 출연금 미편성,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으로 전체적인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 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금 증액 지원이 필요함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4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 경비를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
지도감독 부서의견 (종 평)	○ 충북발전연구원 기능 활성화를 통해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충북 씽크탱크로서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활발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2016년도에는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 등 자체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충북발전연구원 본연의 연구기능 수행을 위해 출연규모를 금년대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첨부자료	1.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 출연기관 현황 3. 출연 사업계획서

1-①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

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

○ (경영평가) 2014 경영평가 결과 : "나" 등급(89.5점)

- 리더십, 책임경영, 경영시스템(인사, 재무, 제도관리 등) 분야에서 경영혁신 노력과 경영전략, 재무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과제 신설, 4%경제기획단, 중국연구센터, 환경총량연구팀 구성, 시군정책자문단 운영, 연구인력 신규채용, 평가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 노력중

☞ 또한 수입·지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매달 예산 사용내역을 점검하는 등 연말에 집중된 사업비 지출을 개선토록 노력중

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

○ 충북발전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도정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2016년도에는 금리하락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 시군 출연금 삭감, 수탁과제 전입금 감소 등으로 자체세입이 금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충북발전연구원의 충북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강화 더불어,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금년대비 출연규모를 상향하여 출연하는 것이 필요함

3 운영비성 출연금 검토

(단위:천원)

구 분	2015년 (C)	2016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B-C)
		기관 요구액(A)	실과 산정액(B)	증감(B-A)	
출연금	2,750,000	3,412,000	3,192,000	△220,000	442,000

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

사업목적 명확성	출연의 타당성	유사 중복성	사업방식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	투자대비 효과성	재원분담 적절성
여	여	부	여	여	여	여

1-② 출자·출연 기관현황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3-220-1141 홈페이지 :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4.12.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1 명	27 명	44명

임 원 ('14.12.31 기준)				
	이사장	이○○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정○○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김○○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이○○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조○○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정○○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재임기간
	당연직이사	정○○	충북발전연구원장	재임기간
	선임직이사	노○○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2013. 04. 03 - 2016. 04. 02
	선임직이사	손○○	서원대학교 총장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한○○	충북지역개발회 회장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이○○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안○○	청풍로펌 변호사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유○○	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주○○	청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이○○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백○○	영동대학교 교수	2014. 07. 23 - 2017. 07. 22
	선임직이사	정○○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복지대학원장	2014. 07. 23 - 2017. 07. 22
	당연직 감사	박○○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선임직 감사	김○○	공인회계사	2014. 07. 23 - 2017. 07. 22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02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8,72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4.12.31기준	자산	12,240
	예산액2」	7,155 (특별회계포함)	3,204	4,332		부채	3,011
	지자체 지원액3」	1,733	2,000	2,750		자본1」	9,229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4.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472	6,576	△104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1-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구분	출자	-
주관부서	정책기획관실		출연	3,192,000천원(도비)

□ 목적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 대처 및 도정 정책대안 제시

○ 도정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역발전 견인 정책개발

□ 출연개요

○ 사 업 명 :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출연금액 : 3,192,000천원(도비 100%)

○ 주요내용 :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사업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4항

□ 산출기초

○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2,560,000천원

○ 특별연구조직 운영 632,000천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출연금	12,783	500	1,600	1,300	1,300	1,600	1,733	2,000	2,750

□ 기대효과

○ 도정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

○ 도정 및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통한 지역발전 견인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운영비 부족으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수탁사업 치중 우려

○ 정책대안 제시 등 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책개발 기능 수행한계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5.28.>

제6조(출자·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충북발전연구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충북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충북발전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 6. 10.>

② 제1항의 기금은 도와 관내 시·군(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과 그 외의 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